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구구보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행복. 연구구

발행·편집인:연구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구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구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284호 2021. 12. 20.(월)

【조 례】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1396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1397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1398호(인천광역시 연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1399호(인천광역시 연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2
- 인천광역시 연구구 조례 1400호(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구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7

【공 고】

- 인천광역시 연구구 공고 제2021-1707호(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2차) 신청서류 열람 공고) 59
- 인천광역시 연구구 공고 제2021-1711호(인천광역시 연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6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구구 고시 제2021-116호(송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68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구직자들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제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구직자 대상 구직비용 예산지원(제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 및 그 밖에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문 정비 ○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제2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 및 다른” 을 “다른” 으로 한다.

제2장 다음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제1항 중 “센터” 를 “창업지원센터” 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 지원

2. 그 밖에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설치할 수 있다” 를 “설치한다”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정책과장” 을 “업무 담당 과장” 으로, “중에서” 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수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기관,” 을 “연구기관”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7인” 을 “7명” 으로 한다.

제18조 중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를 “다만,” 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차리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당”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u>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13조(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할 수 있다.</u></p> <p>제15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p>	<p>----- -----.</p> <p>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u>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 지원</u></p> <p>2. <u>그 밖에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13조(설치) ----- ----- ----- ----- ----- <u>설치한다.</u></p> <p>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현행	개정안
<p><u>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u>업무 담당 과장-----, -----</u> <u>----- 중에서</u> <u>성별을 고려하여 -----</u> <u>-----.</u></p>
<p>1. <u>연수구의회의 의원</u></p> <p>2. <u>경제단체, 학계, 기업대표, 연구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u></p>	<p>1.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u></p> <p>2. -----, ----, -----, <u>연구기관 -----</u> <u>-----</u></p>
<p>제16조(소위원회) ① (생략)</p> <p>② <u>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제16조(소위원회) ① (생략)</p> <p>② ----- <u>7명</u> <u>-----.</u></p>
<p>③ ~ ④ (생략)</p> <p>제18조(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임기) ----- <u>-----, -----</u> <u>-----.</u> <u>다만, -----</u> <u>-----</u> <u>-----.</u></p>
<p>제19조(운영) <u>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u></p> <p>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u></p>	<p>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u>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u></p>	
<p><u>제2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u></p> <p><u>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u></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u>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p> <p><u>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u></p> <p><u>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u>⑤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u></p>
<p><u>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24조(수당 등) ----- --- 위촉직 위원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 . <단서 삭제></p>
<p><u>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의무 규정 삭제 (제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수구에”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 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 가구” 를 “폐가구”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활용 가능” 을 “재활용가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민” 을 “구민” 으로 한다.

1. “대형폐기물”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 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설치 운영” 을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설치한다.

제5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를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 조례」의 규정을”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
리 조례」에”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탁기관이” 를 “수탁자가” 로, “수탁기관과” 를 “수탁
자와” 로, “하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을” 을 “사항이” 로 한다.

제10조 제목 “(지원)” 을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홍보하고 지원” 을 “홍보”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의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탁
자와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
자가 재위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u>연수구에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대형폐기물</u>”이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u>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u></p> <p>2. “<u>중고물품</u>”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u>폐 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u></p> <p>3. “<u>재활용품</u>”이란 「자원의 절</p>	<p>제1조(목적) -----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u> ----- -----.</p> <p>제2조(정의) ----- -----.</p> <p>1. “<u>대형폐기물</u>”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u>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u></p> <p>2. ----- ----- ----- <u>폐가구,</u> ----- -----.</p> <p>3. -----</p>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재활용센터”란 연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아나바다 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의 위치는 연수구 관내에 둔다.

제5조(위탁운영)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

----- 재활용가능 -----
-----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

----- .

5. -----
----- , ----- , -----
----- 구민-----
----- , -----
----- .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

----- 설치·운영 -----
----- .

② 재활용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설치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

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연수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②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

제6조(협약체결 등) ① ----- 수탁자가 ----- 수탁자와 ----- 한다.

② -----, -----, -----, ----- 사항이 -----.

제10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홍보-----.

<삭 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III」 검토결과 반영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657(2021.3.23.), 市 혁신과-2238(2021.3.24.)) - 상위법령 회의록 공개방식 개정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정비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공개방식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제1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 를 “운영에 필요”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무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를 “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촉할 수 있다” 를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제3조제5항 본문 중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연수구”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를 “따라 위원회” 로, “위원회의 위원은” 을 “경우는” 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위원장등의 직무)” 를 “(위원장 등의 직무)”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히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 를 “위원 중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중” 을 “사항 중”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열람하게 할” 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로, “열람하게 할” 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로 한다.

제12조 제목 “(수당등의 지급)” 을 “(수당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수당”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동위원회운영” 을 “공동위원회 운영”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u>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천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는 <u>사무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u></p> <p>2. ~ 4. (생략)</p> <p>제3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p>	<p>제1조(목적) ----- ----- ----- ----- <u>운영에 필요</u> ----- ----- -----.</p> <p>제2조(기능) ----- ----- -----.</p> <p>1. ----- <u>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u>----- -----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위촉</u> <u>한다.</u> ----- -----</p>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생략)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생략)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③ (생략)

제5조(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 -----

-----.

1. -----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연수구-----

----- 따라 위
원회 -----

----- 경우는 -----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분과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분
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
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
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
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 긴급히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는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 중에서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항 중

-----.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

다만,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
으로 공개할 -----.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 -----, -----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
--.

제12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
----- 공동위원회 운영

-----.

제14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2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명시(제4조) ○ 의견제출 방법 규정(제5조 ~ 제6조) ○ 의견 검토방법 규정(제7조) ○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부칙에 시행일 명시(2022. 1. 13. 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39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 및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의견제출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별지 사용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2021년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부서(장)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p> <p>2. 주요내용</p> <p>○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제명 포함) 등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같은법” → “같은 법” - “당해년도” → “해당연도” 등 <p>○ 법제처 「2021년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 등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청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00 호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 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5인” 을 “5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구(소속기관 포함)”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를 “그 밖에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주1회”를 “주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타 이외”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따라 분담하게 한다.”를 “따름”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법” 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긴급복지지원법」”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 및 같은법” 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같은법” 을 각각 “같은 법” 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 을 “「영유아보육법」” 으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를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 을 “구청장은 보육” 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회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법”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분임재무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연수구청” 을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2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연수구”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9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지역보건법」” 으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 를 “과태료” 로 한다.
제2조 중 “법” 을 “「지역보건법」” 으로 한다.

제30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 를 “따라” 로,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 를 “보건소”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라 한다)” 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건강복지법” 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u>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비용추계서”란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p> <p>2. “세출”이란 <u>인천광역시연수구</u>(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략)</p>	<p>제1조(목적) ----- -----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u>----- ----- -----<u>필요</u>----- -----.</p> <p>제2조(정의) ----- -----.</p> <p>1. -----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u>----- ----- ----- ----- ----- ----- -----.</p> <p>2. ----- <u>인천광역시연수구</u>----- ----- ----- -----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u>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u> ----- -----.</p>
--	--

2.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 <u>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u>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① <u>구청장은</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u>5인</u>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직무) ① (생략)</p>	<p>제1조(목적)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p> <p>제2조(위촉)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u>5명</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1. <u>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u></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u>」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1. <u>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u>」-----</p> <p>1. ~ 2. (현행과 같음)</p>
---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u>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p> <p>-----</p> <p>-----</p> <p>-----</p> <p>----- <u>용역과제심의위원회</u>-----</p> <p>----- <u>필요</u>-----</p> <p>-----.</p>

<p>제3조(기능) <u>위원회</u>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4. (생략)</p> <p>4. <u>기타</u>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기능) <u>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p>
--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2조(임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u>법</u> 제58조제4항에 따른다.</p>	<p>제1조(목적) -----</p> <p>----- 「지방공기업법」 -----</p> <p>-----</p> <p>-----</p> <p>-----</p> <p>제12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p>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p>	<p>제1조(목적) -----</p> <p>-----</p>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
 -----.

제2조(발행) ① -----

 -- 주 1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

제3조(게재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u>법시행령 제11조의2</u> 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이 된다.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p> <p>1. ~ 9. (생략)</p> <p>10. <u>기타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u> 지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u>따라</u> 담당하게 한다.</p>	<p>제7조(업무의 분담)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u>따름</u></p>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외국인 관광객”이란 <u>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u></p> <p>2. ~ 6. (생략)</p> <p>7. “관광모니터”란 <u>구민 중에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u></p>	<p>제2조(정의) ----- -----.</p> <p>1. -----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p> <p>2. ~ 6. (현행과 같음)</p> <p>7.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p>

<p>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광발전 전에 관한 사항과 관광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 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 및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 ----- ----- -----.</p>
--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p>
<p>제13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p>	<p>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p>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 -----</p>
<p>2. ~ 3. (생 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이란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폐성장아인”이란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필요 -----
-----.

제2조(정의) -----
----- 뜻은 -----.

1.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

-----.
2. -----
----- 같은 법 -----,

-----.
3. (현행과 같음)
4. -----
같은 법 -----

-----.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u>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의 설치 및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2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u> ----- ----- <u>필요</u> ----- ----- .
제2조(기능) <u>위원회</u> 는 다음 <u>각호</u> 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u>각 호</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u>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인천광역시연수구</u> ----- ----- .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생략)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p>② 구청장은 <u>연수구</u>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②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이하 “구”라 한다)-----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u>」-----.</p>
--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연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연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연수구청장----- ----- ----- ----- -----.</p>
<p>제2조(책임) ①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보육----- -----.</p>
<p>제3조(설치) 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 -----.</p>

18.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p>	<p>제1조(목적) ----- 「발전소주</p>

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분임재무관 : 담당국장

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 필요-----
-----.

제2조(정의) -----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3조(세입·세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따른 -----.

② 특별회계-----
----- 따른 -----
-----.

제4조(이월사용) 해당년도-----
----- 다음년도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

-----.

1. -----, 재무관 : -----

2. ~ 3. (생략)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	---

19.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21.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p>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u>필요</u>----- -----.</p>
<p>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p>	<p>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연수구청장-----.</p>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p>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사</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 -----</p>

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영업장소 지정) ① (생략) ② <u>구청장</u> 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등을 고려하여 영업기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생략)	제2조(영업장소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u>연수구</u> 에 주민등록 신고한 자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0조(환경보전 계획)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연수구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보전 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 ⑤ (현행과 같음)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1. <u>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u>	1.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및 운영비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재정지원)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조(재정지원)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u>과태료</u> (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보건법</u> 」 ----- ----- ----- <u>과태료</u> ----- ----- -----.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u>법</u>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 ----- 「 <u>지역보건법</u> 」 ----- -----.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u>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u> 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따라 ----- ----- 보건소 ----- ----- 필요 ----- -----.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 <u>정신건강복지법</u> ”이라 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정신건강복지센터</u> ”란 <u>정신건강복지법</u>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어 <u>정신건강증진사업</u> 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2. (생략)	1. -----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 ----- -----.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	제5조(운영의 위탁) ① -----
	2. (현행과 같음)

<p>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u>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u>」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u>구청장</u>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u></p> <p>4. ~ 9.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 -----</p> <p>4. ~ 9. (현행과 같음)</p>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2차)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2호(2020.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8호(2021.6.28.)호로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사모지근린공원) 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56-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12. 20.~ 2022. 1. 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38-3번지 1필지
 - 토지소유자 : 이○희(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8.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38-3번지 감나무 등 총 15건
9. 기 타
 -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로 권한이 이양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삭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
 -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 안 제1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 안 제16조 단서

“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102, 황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102, FAX 749-7079

○ E - mail : rath061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 구민” 을 “구민” 으로 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입법예고” 를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 로 한다.

제3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

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제목 “자치법규 등의 공포” 를 “자치법규의 공포 등”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의회” 를 “구의회” 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이전” 을 “시행 이전” 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인천광역시 연수구-----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p> <p>② -----</p>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3장 입법예고

<신설>

제4장 자치법규 등의 공포

제13조(조례의 공포) ① (생략)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 구민 -----
-----,

제2장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

제4조(입법안 작성)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등

제13조(조례의 공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규칙의 공포 등) ① (생략)

② 예산·결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
-----, -----
-----.

제14조(규칙의 공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의회 -----

-----.

제16조(공포방법) -----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

-----.

제18조(사전교육 등) -----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
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
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 이전-----
-----, -----

-----.

제21조(시행규칙) -----
----- 필요-----
-----.

송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1번지 외 2필지 일원 송도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 명 칭: 송도 온천공보호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1, 96, 122
- 면 적: 13,138.6㎡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사유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

3.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